

순천대학교 포스코학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

제정 1996. 4. 1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스코학술회관(가칭)의 건립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포스코학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설계 지침에 관한 사항.
2. 실시설계 지침에 관한 사항.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공과대학장·기획연구처·시설과장·건축공학과장·전기제어공학과장 및 정보통신공학과장과 조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·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총장이 지명한다.

부 칙 (1995. 4. 1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